

蠶繭 및 生絲의 流通構造 改善

金 永 佑

〈明知大 教授〉

一. 蠶繭 및 生絲 流通構造의 特性

1. 蠶業은 植物的 動物的 加工의 部門이 結合 混合된 產業이므로 流通段階 및 流通機能이 多邊的이며 他產業과 鮮격하게 다름.

2. 一般的 農産物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蠶繭은 6月의 春蠶과 8月의 夏秋蠶時期的 集中的으로 出廻되므로서 商品의 需給彈力性은 거의 없고 따라서 政府의 蒐集操作이 要望됨.

3. 蠶繭의 去來制度는 日政時의 特約共同販賣制와 大同小異한 것으로 流通機能의 硬直化를 그대로 存續하고 있음. 即 蠶繭供給全量이 農協의 蠶絲共販賣에서 共販되고 道知事가 製絲工場別購繭地域을 定하는 바에 따라 製絲工場이 引受함.

4. 流通마진은 他商品과 같이 시장경제적거래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事實에 있어서는 檢査制度訴訟審議 과정에서 相當한 마진이 存在함.

5. 一時에 蠶繭이 供給됨으로 해서 檢査制度合理化(機械檢査), 乾繭場設置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이 크게 要請됨.

二. 流通канал과 마진

1. 中間상인이 거의 介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中間商業 마진은 本源的으로 있을 수 없고 따라서 中間마진도 없으나 관계업종간의 이해가 銳角의를 나타나 있음.

2. 檢査方法의 前近代性(肉眠檢査)으로 因하여 養蠶農家의 收入이 他部的으로 轉家되고 있음.

標準 規格規定上의 基準生絲量비율과 全繭去來量中 標本抽出하여 蠶業試驗場에서 操業한 것과도 比較해 보면 春蠶인 경우 등급별 絲量이 0.61~4.07%의 과소사정의 結果가 나타나고 있음. 이는 檢査制度의 不合理로 因해 總繭販賣額의 약 20%를 養蠶農家가 損害를 보고있는 結果임.

3. 統制經濟의 商品流通의 경우 國民경제의 市場經濟의 自由經濟原則을 沮害할 우려가 있음(쌀의 配給制)

蠶繭 等級制 生絲量 比率(1965)

	春		秋	
	標準	實績	標準	實績
秀 等	16.0	16.61	15.0	15.8
優 等	15.0	16.10	14.0	15.25
特 等	14.0	15.41	13.0	14.74
1 等	13.0	14.86	12.0	13.83
2 等	12.0	14.61	11.0	13.81
3 等	11.0	14.38	10.0	8.0
等 外	8.0	12.07	7.0	12.27

三. 流通構造 改善을 위한 몇가지 제언

1. 前 提

流通政策을 需要擴大 生産性增大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고 한국경제의 自由 경제정책에 一助할 수 있도록 할 것.

2. 流通施設에 擴充

(1) 機械檢査施設擴充 三箇年計劃樹立(農林部의 農業 機械化計劃의 一環으로 推進)

主要集散別 우선순위를 두고 機械檢査制度로 擴充하고 그 以外 기계검사시설의 妥當性이 없는 繭共販場은 肉眼檢査로 併行實施토록 함 것임.

이 경우 每年 蠶業試驗場의 標本調査를 施行하고 그 實情을 翌年 生絲量比率 決定時에 充分히 참여토록 할 것.

(2) 乾繭場施設

養蠶協同組合(後述함)에 乾繭場施設을 擴充하여 協同 組合의 경제사업으로 推進할 것임. 製絲工場의 施設基準에 一定한 乾繭場施設을 擴充토록 할 것임.

3. 養蠶協同組合의 設置와 蠶絲類流通의 革新

(1) 蠶絲類流通의 硬直化를 防止하고 養蠶所得의 增大과 農民自助精神을 函養키 위하여 養蠶協同組合을 設置하고 蠶絲類流通에 있어 市場經濟의 機能을 擔當토록 함.

(2) 性格은 農協特殊組合으로 設置

(3) 主要事業으로는

1) 蠶繭共販事業

2) 生産費調査 및 基礎調査事業

3) 經濟事業 { 乾繭場設置運營
製絲工場運營(特設地區)
其他

4) 指導事業; 農林部, 蠶絲會, 農協의 指導事業 引受統合

5) 共濟事業;

(4) 財源; 購繭資金의 基金化

經濟事業의 利益金 및 手數料 蠶繭共販事業手數料

其他 政府政策資金의 轉貸

質 疑 應 答

〈問〉 崔炳熙(서울大 農大): 蠶業增産의 沮害要因은 流通構造改善보다 換率現實化가 더 큰 問題點이 아닌가?

〈答〉 그것은 우리나라 産業의 全般的인 문제이다.

〈問〉 金華山(國立서울生絲檢査所): 養蠶協同組合이 設立된다면 製絲家도 포함되느냐?

〈答〉 포함되지 않는다.

〈問〉 金華山(國立서울生絲檢査所): 協同組合基金은 어떻게 마련하나?

〈答〉 組合員의 一定한 組合費, 製絲家의 購繭資金 및 國家의 政策的 借入으로 基金形式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問〉 金華山(國立서울生絲檢査所): 製絲家의 購繭資金은 100% 基金化시키겠는가?

〈答〉 그렇다.

〈問〉 李在勝(農林部): 組合의 競賣를 통해서 고치를去來한다면 流通上의 硬直性이 解消된다고 생각하느냐?

〈答〉 製絲家와의 競賣를 통해 去來한다면 解消된다고 본다.

〈問〉 金文浹(서울大 農大): 蠶繭去來를 協同組合을 통해서 한다면 中間-margin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약 어느 정도의 margin이 생긴다 해도 競賣過程에서의 利益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問〉 朴炳禧(大韓蠶絲會): 大幅的으로 繭價가 下落할 때 協同組合의 運營方案은?

〈答〉 政府의 政策的 對策이 있어야 한다.

〈問〉 金榮鎮(國立釜山生絲檢査所): 産繭量이 적어서 製絲家의 競合購賣時는 어떻게 하겠는가?

〈答〉 製絲工場의 施設基準에 依할 수 밖에 없다.

〈問〉 朴炳禧(大韓蠶絲會): 製絲家가 團合해서 購賣를 拒否할 때는 결국 農民이 손해가 아닌가?

〈答〉 現在의 實情으로 그러한 憂慮는 없다.

〈問〉 李在勝(農林部): 養蠶農家가 직접 乾繭해서 製絲家와의 去來는 어떠냐?

〈答〉 現實的으로 곤란하다.